

상생미래대 연계 상생매담대 통합약정서(판매기업용)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

| | | | | |
|-----------|----|-----|-----|-----|
| 본인확인및인감대조 | 담당 | 책임자 | 관리자 | 부점장 |
| | | | | |

여신거래신청서(기업용)

(포괄한도용)

1. 신청인 주요내용

| | | | | | | | | |
|------------------|----|------------------|------|-----|-----|------|-------|------|
| 신 청 인 | | (인) | | | | | |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 | | | |
| 설립일자 (생년월일) | | 기 업 규 모 | | | | | | |
| 업 종 | | 전 화 번 호 | | | | | | |
| 주요제품 | | | | | | | | |
| 주 요 재 무 | 년도 | 총자산 | 자기자본 | 자본금 | 매출액 | 경상이익 | 당기순이익 | 부채비율 |
| | | | | | | | | |
| | | | | | | | | |

2. 여신신청내역

| | | | | | | | | |
|-----------|----|------|----|-----|----|--|--|--|
| 포괄한도 () | 금 | () | | | | | | |
| 포괄한도A () | 금 | () | | | | | | |
| 과목 | 금액 | 여신기간 | 금리 | 보증인 | | | | |
| | | | | 종류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포괄한도B () | 금 | () | | | | | | |
| 과목 | 금액 | 여신기간 | 금리 | 보증인 | | | | |
| | | | | 종류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담보내역

(단위 : 백만원, m²)

| | | | |
|-------|-----|--|--|
| 소 재 지 | | | |
| 종 류 | | | |
| 수 량 | | | |
| 감 정 가 | | | |
| 유효담보가 | | | |
| 담보제공자 | 관 계 | | |



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포괄한도 거래약정서(기업용)

수
입
인
지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본인은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의 포괄한도거래를 함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약정합니다.

제 1 조 (거래조건)

- ① 본인과 은행은 포괄여신한도 및 이자율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다만, 본인의 여신신청은 각 여신과목별 한도내의 취급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여신종별한도(포괄한도 및 포괄한도) 및 총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합니다. 다만, 외화여신과 원화여신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외화여신의 원화 환산율은 매 직전일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총 한 도 | | 금 () 원 | | | |
|-----------------------------|------|-----------------------------|---|---|--|
| 여신종별한도 (포괄한도) | | 금 | | | |
| 여신 과목별 한도 | 여신과목 | 금액 | 이자율 | | 지연배상금율 |
| | | 금 | <input type="checkbox"/> 고정 | <input type="checkbox"/>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 | 지연배상금율은 제1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아래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결정합니다. 단, 최고지연배상금율은 연 %로 합니다. |
| | | | <input type="checkbox"/> 변동 | <input type="checkbox"/> 기준금리()+()%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금 | <input type="checkbox"/> 고정 | <input type="checkbox"/>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 | |
| <input type="checkbox"/> 변동 | | | <input type="checkbox"/> 기준금리()+()% <input type="checkbox"/> 기타() | 연체기간이 ()개월 이하인 경우: 연 % | |
| | 금 | <input type="checkbox"/> 고정 | <input type="checkbox"/>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 | 연체기간이 ()개월 초과인 경우: 연 % | |
| | | <input type="checkbox"/> 변동 | <input type="checkbox"/> 기준금리()+()%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여신종별한도 (포괄한도) | | 금 | | | |
| 여신 과목별 한도 | 여신과목 | 금액 | 이자율 | | 지연배상금율 |
| | | 금 | <input type="checkbox"/> 고정 | <input type="checkbox"/>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 | 지연배상금율은 제1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아래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결정합니다. 단, 최고지연배상금율은 연 %로 합니다. |
| | | | <input type="checkbox"/> 변동 | <input type="checkbox"/> 기준금리()+()%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금 | <input type="checkbox"/> 고정 | <input type="checkbox"/>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 | |
| <input type="checkbox"/> 변동 | | | <input type="checkbox"/> 기준금리()+()% <input type="checkbox"/> 기타() | 연체기간이 ()개월 이하인 경우: 연 % | |
| | 금 | <input type="checkbox"/> 고정 | <input type="checkbox"/>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 | 연체기간이 ()개월 초과인 경우: 연 % | |
| | | <input type="checkbox"/> 변동 | <input type="checkbox"/> 기준금리()+()%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② 귀행이 승인하는 때에는 총한도 범위 내에서 여신종별한도를 초과할 수 있기로 한다.
 ③ 이 약정에서 정한 이자, 수수료 및 지연배상금을 계산할 때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 상관습에 따릅니다.
 ④ 여신실행방법, 상환방법, 이자 지급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 |
|--------------|--|
| 여신 실행 방법 | <input type="checkbox"/> 여신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중형서류나 연물 등에 의하여 은행이 자금 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상환 방법 | <input type="checkbox"/>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 및 이자지급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자 지급시기 및 방법 | <input type="checkbox"/> 최초이자: 여신개시일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에 선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어음기일 전일까지 선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최초이자: 여신개시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그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분할상환원금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여신기간 만료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 및 이자지급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 2 조 (거래기간)

이 약정에 의한 거래기간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이자율의 변동)

- 제1조의 이자율을 변동금리로 적용하는 경우 시장금리 또는 단기코픽스금리에 연동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금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대출금 실행 직전 영업일의 91일물 CD유통수익률, AAA등급 6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AAA등급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단기코픽스금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준금리로 적용합니다.
 - 이 약정서의 91일물 CD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수익률로 하며, 6개월물 금융채 또는 1년물 금융채의 유통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수익률 중 3개 채권평가회사 통합표의 수익률로 하고 단기코픽스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금리로 합니다.
- 제1항의 시장금리 또는 단기코픽스금리 연동대출의 경우 최초 ()개월간은 최초 약정금리를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매 ()개월마다 최초 대출상당일(최초 대출상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일 말일) 직전 영업일의 시장금리 또는 단기코픽스금리를 기준금리로 하고 여기에 제1조의 가산금리를 더하여 변경된 금리를 별도의 통지없이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 4 조 (중도상환수수료)

- 본인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약정한 대출기일(기한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일 포함, 이하 같음)전에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으로 하며, 최초 대출일로부터()년 (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로 적용합니다.
· 기타 ()

- 대출잔여일수 등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도록 합니다.
 - 「대출잔여일수」는 상환방법에 상관없이 상환일로부터 약정한 대출기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대출기간에서 경과일수(최초 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일수)를 차감하여 구합니다.
 - 「대출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약정한 대출기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하되, 3년이 초과하더라도 3년(일수)으로 정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이내로 적용합니다.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 대출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외화대출을 타 통화(원화 포함)로 대환하는 경우
 - 담보물건의 공용수용 등 공익목적 국가사업 추진으로 인해 불가피한 기일전 상환의 경우
 - 예금담보대출(은행의 예금, 적금, 부금, 금전신탁 수익권 등을 담보로 하여 전액 은행이 정한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합니다)을 기일전 상환하는 경우
 - 정책자금대출을 기일전 상환하는 경우
 - 기한이익 상실, 상계, 기업 구조조정 업무(Work-Out) 등으로 은행이 대출을 기일전 회수하는 경우
 - 채무자의 사망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제 5 조 (지연배상금)

-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발생 포함)에는 그 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6 조 (차용총액 확정)

본 약정에 의한 차용총액은 여신과목별 취급잔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제 7 조 (감액·정지)

- 한도거래 및 분할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한도금액을 줄이거나 제2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대출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 초과 금액은 곧 갚기로 합니다.
- 제 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곧 감액·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 8 조 (인지세의 부담)

-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제 9 조 (약정한도수수료)

① 본인은 한도거래 여신 또는 외화대출을 약정할 때 여신과목별 약정한도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해당 여신과목에 대해 제10조에서 정한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약정한도수수료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 여신 과목 | 약정 한도 수수료 |
|-------|---|
| | <input type="checkbox"/> 여신한도 약정금액 x ()% |
| | <input type="checkbox"/> 여신한도 약정금액 x ()% |
| | <input type="checkbox"/> 여신한도 약정금액 x ()% |

② 제1조의 한도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한도증액 약정금액에 대하여 한도증액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남은 개월수(1개월 미만 절사)에 대하여 약정한도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본인의 요청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여신거래약정서 및 본 약정서에서 정한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한도가 변경(감액, 해지, 해제, 정지)될 경우 한도약정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 10 조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① 본인은 한도거래 여신 또는 외화대출의 경우 여신과목별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해당 여신과목에 대해 제9조에서 정한 약정한도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 여신 과목 | 약정 한도 미사용 수수료 |
|-------|--|
| | <input type="checkbox"/> 약정한도 미사용금액(즉, 약정한도평잔 -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 x ()% x 운용기간/365(윤년은 366, 외화대출은 360) |
| | <input type="checkbox"/> 약정한도 미사용금액(즉, 약정한도평잔 -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 x ()% x 운용기간/365(윤년은 366, 외화대출은 360) |
| | <input type="checkbox"/> 약정한도 미사용금액(즉, 약정한도평잔 -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 x ()% x 운용기간/365(윤년은 366, 외화대출은 360) |

②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등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 당좌대출 및 통장식 한도거래대출의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은 전월 결산일 익영업일로부터 금월 결산일까지 매일의 적수에 대한 평잔입니다.
- 제1호의 대출 이외의 한도거래여신에 대한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은 미사용수수료 최종납입일의 익일부터 납입할 날까지의 매일의 잔액에 대한 평잔입니다.
- 「약정한도평잔」은 운용기간 중 약정한도의 평잔입니다.

③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 당좌대출 및 통장식 한도거래대출은 결산일 익일 또는 약정해지일에 대출약정 한도금액 이내에서 대출원금에 가산합니다. 다만, 잔액이 예금일 경우에는 동 예금에서 차감합니다.
- 대출약정 한도금액 부족으로 수수료가 일부라도 원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을 곧 변제하거나 해당 모계좌에 변제를 위하여 입금하기로 하며, 입금된 자금은 부족한 수수료 변제에 최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 제1호의 대출 이외에 이자원가일이 없는 한도거래여신은 한도내 개별대출 실행시 또는 약정해지일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납입지연시에는 은행은 추가여신 취급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상환통화 및 환율)

외화대출의 원리금을 차용통화 또는 원화로 상환할 수 있으며, 원화로 상환하는 경우 적용 환율은 상환 당일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 12 조 (담보·보험)

본인은 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여신으로 건설 또는 설치된 시설물을 그것이 설치된 토지·건물 및 그 안의 기타 시설과 함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은행이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제공하기로 합니다.

제 13 조 (담보권 설정)

-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 앞으로 그 증서(통장)의 인도를 마쳤습니다.
-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
- 예금 등이 기한연장·개서·갱신·분할·병합·중액 또는 이자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 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
-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 (근)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



| 종별 | 증서기·번호 | 명의인(위탁자) | 금액 (계약액) | 20 . . . 까지 입금누계액 | 증서일자 | 지급일자 |
|----|--------|----------|-------------|----------------------|------|------|
| | 계좌번호 | 수익자 | | | | |
| | | | | | | |
| | | | | | | |

제 14 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① 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 밖에 재무구조 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

| 구 분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
| 부채 비율 | % | % | % | % | % |
| 자기자본비율 | % | % | % | % | % |
| ()비율 | % | % | % | % | % |
| ()비율 | % | % | % | % | % |

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기로 합니다.

1.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임대
2.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3.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4.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5. 기업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본인은 은행이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

1.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2. 지배주주의 출자
3.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인과 은행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 15 조 (자료의 제출 등)

① 본인은 은행이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매분기 :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2.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3. 매 년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3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KS, ISO, 특허권 등), 노사분규확인서, 기타 제품설명서, 동업계 참고자료 등
4. 수 시 :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

② 본인은 은행이 본인에 대한 신용평가시 기업의 외환리스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외환리스크 관리조직 및 관리규정 현황
2.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현황
3.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

제 16 조 (기타 특약사항)

| | | |
|--|-----|-----|
| | 본 인 | (인) |
|--|-----|-----|



추가약정서(판매기업용)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용)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_____ (이하 “본인” 또는 “협력기업”이라합니다)은 (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_____ (이하 “구매기업”이라 합니다)의 발주서를 근거로 하는 은행의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을 위한 20____년 ____월 ____일자 여신거래약정(이하 “원 약정서”라 합니다)에 추가하여 다음 각 조항을 약화하며, 은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제 1 조 (용어의 정의)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기업”이라 함은 경성적인 영업활동으로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협력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2. “협력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은행과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이하 “미래대출”이라 합니다)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를 말합니다.
3. “발주서”라 함은 구매기업이 협력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물품 등의 품목, 발주금액, 납품기한, 발주서만기일, 대금지급확약비율 등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은행에 게 전송하는 구매기업과 협력기업 간의 물품공급계약서, 물품구입주문서, 구매승인서 등을 말합니다.
4. “대금지급확약비율”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전송하는 발주서에 의해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미래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협력기업의 납품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구매기업이 반드시 결제하여야 하는 당연변제의무비율을 말합니다.
5. “채권확정”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협력기업의 납품으로 발생하는 물품 등의 대금지급채무를 외상매출채권 발행, 지급승인명세의 전송 등 구매자료를 은행에 전송하여 외상매출채권 및 대금지급일을 확정(이하 “확정채권”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6. “납품기한”이라 함은 협력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하여야 하는 기한을 말합니다.
7. “발주서만기일”이라 함은 발주서상의 대금지급예정일을 말하며, 미래대출 취급시 대출만기일로 지정되거나 채권확정 시 지정되는 대금지급일로 대출만기일이 변경됩니다.
8. “대금지급일”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협력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약정한 결제계좌에 구매대금을 입금하여야 하는 일자로서, 매출채권의 만기일을 말합니다.
9. “매출채권”이라 함은 협력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함으로써 취득하는 외상매출채권과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 체결을 통해 취득하는 발주서등 미래채권을 말합니다.
10. “기업인터넷뱅킹”이라 함은 HanaCBS Light, HanaCBS, BiCNET 등을 말합니다.
11. “전자적인 방식”이라 함은 발주서 전송, 채권확정, 외상매출채권 발행, 지급승인명세 전송 등 미래대출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기업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제 2 조 (입금계좌의 지정)

본인은 은행의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과 관련하여 개별대출금의 입금 또는 발주서상의 대금지급일 도래시의 결제대금 입금을 위한 입금계좌를 아래와 같이 약정합니다. (하나은행에 개설한 본인명의의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

| 예금주 | 예금주 사업자번호 | 계좌번호 | 비고 |
|-----|-----------|------|-----------------------------------|
| | | | 법인의 본지사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금주 사업자번호 기재 |

제 3 조 (발주서의 전송, 취소 및 변경)

- ① 구매기업이 은행에게 발주서를 통보한 경우, 대금지급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구매기업은 본인과 협력기업의 납품계약의 하자, 전산조작오류, 기타 사유를 이유로 은행에게 발주서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
- ② 구매기업이 통보한 발주서에 대하여 본인이 미래대출을 실행하거나, 대금지급일이 도래한 경우 구매기업은 발주서를 취소할 수 없기로 합니다.
- ③ 구매기업이 발주서를 취소하는 경우에 은행은 취소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니다.
- ④ 허위매출, 현금용통성거래 등과 같이 상거래와 무관한 발주서 전송시, 은행은 강제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⑤ 구매기업의 채권확정 전에 한하여 발주금액, 납품기한, 대금지급일, 대금지급확약비율 등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되, 본인이 발주금액에 대하여 일부라도 미래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이미 취급한 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서만기일을 제외한 발주금액, 납품기한, 대금지급확약비율 등의 변경은 가능하기로 합니다.

제 4 조 (개별대출의 실행)

- ① 원 약정서 상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개별대출금은, 구매기업과 약정한 발주서 상의 대금지급확약비율을 적용한 금액(이하 “지급확약금액”이라 합니다)의 80%범위 내에서 발주서별로 최대 5회까지 분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개별대출의 실행은 발주서 상 납품기한 전 은행영업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개별대출금 만기일은 대출실행시 발주서 상 발주서만기일로 임시 지정됩니다.
- ④ 은행 또는 인터넷 등 전산상의 사유로 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대출 신청하기로 합니다.

제 5 조 (개별대출금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

- ①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또는 지급승인명세의 전송 등의 방법으로 채권확정을 할 경우, 은행은 본인과 별도 약정한 확정채권 여신약정(상생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생e-안심팩토링대출, 상생일반구매론 등)에 따른 대출이나 선입금(이하 "확정채권대출"이라 합니다)을 자동으로 실행하여 개별대출금 만기일에 불구하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 ② 구매기업이 납품기한까지 채권확정을 하지 않는 경우 발주서 조건에 따라 지급확약금액을 채권금액으로 하고 발주서만기일을 대금지급일로 하여 매출채권이 자동확정되며 개별대출금 만기일은 대금지급일로 확정됩니다.
- ③ 전항에 의한 개별대출금의 상환은 대금지급일에 은행이 구매기업으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아 충당하기로 합니다.
- ④ 전항의 개별대출금을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 그 나머지 대출금은 본인이 즉시 상환하기로 하며, 상환 전까지 추가적인 대출이 불가합니다.
- ⑤ 본인 또는 구매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채권확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해소한 후 채권확정하거나, 제2항 부터 제4항에 따라 개별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확정채권대출의 한도부족이나 미약정 또는 약정기한 경과
 2. 채권확정금액이 상환하여야 할 개별대출금의 원금과 이자 및 확정채권대출 이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기타 본인 및 구매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⑥ 개별대출금의 상환일에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원약정서에서 정하는 지연배상금률 및 방법으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6 조 (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미래대출의 실행을 제한하기로 합니다.

- 1. 본인 또는 구매기업이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대위변제·대금지급정보 및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관련인정보, 공공정보가 등록된 경우
- 2. 본인 또는 구매기업이 은행의 내규 등에서 정한 여신의 비적격자인 경우
- 3. 본인 또는 구매기업이 이 약정에 의한 대출이나 다른 대출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
- 4. 본인 또는 구매기업에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5. 허위매출, 현금융통성거래 등 기간상 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등의 납품 용도 외로 발주서가 등록된 경우
- 6. 원 약정서 제4조(감액, 정지)에 의하여 본인의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
- 7. 은행의 전산장애, 인터넷상의 장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8. 구매기업이 대금지급일에 은행에 대하여 변제를 지체한 경우
- 9. 구매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은행에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 본인의 채권자가 구매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상으로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제 7 조 (면책)

- ① 본인의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의 또는 전산조작오류 등 과실로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를 은행에 전송한 경우, 은행이 이를 본인에 의한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로 믿고 이에 따라 본인에 대한 대출을 취급한 이상, 은행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니다. 단,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 합니다.
- ② 은행은 본인으로부터 접수한 전자적 방식에 의한 거래가 천재지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 본인에 대해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사유를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대출약정의 종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약정서에 따른 은행의 본인에 대한 대출의무는 면제되고, 본인의 은행에 대한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은행에 변제하기로 합니다.

- 1. 구매기업에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허위매출, 현금융통성거래 등 기간상 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등의 납품 용도 외로 발주서가 등록되어 대출을 받은 경우

제 9 조 (이 추가약정의 효력)

- ① 이 약정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원 약정서의 약정기한까지 유효합니다.
-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약정기간 내 전송된 발주서에 대하여 미래대출이 취급된 경우에는 상환될 때까지 이 약정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원 약정서에서 정한 여신기간 만료일 전까지 은행 또는 본인 중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원 약정서의 여신기간은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자동연장이라 함은 별도의 한도거래 기간연장용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은행이 정한 최장기간(30년)내에서 구매기업과의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 업무협약의 연장 기간에 따라 자동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연장처리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개별대출금이 여신기간 만료일 현재 연체중인 경우
 2. 본인에 대해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대위변제·대금지급정보 및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관련인정보, 공공정보가 등록된 경우
- ④ 이 약정서, 원 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약정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 그 다음으로 원 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순서로 합니다.



추가약정서(판매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본인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위한 _____년 _____월 _____일자 여신거래약정(이하 "원 약정서"라 한다)에 추가하여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약약합니다.

제 1 조 (서류의 제출)

본인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귀 행에 제출하기로 합니다.

① 제출서류

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신청서(또는 현금입금 신청서)

나. 본인 발행 세금계산서

다. 기타 귀 행이 요청하는 서류

② 본인은 전산장애로 인하여 서류 전송 및 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의 서류를 귀 행의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③ 본인의 거래처(구매기업)가 전송하여 귀 행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담보 외상매출채권 명세의 세금계산서 내역을 본인이 확인한 후 대출신청 또는 현금입금신청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제1항의 서류제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제 2 조 (입금계좌의 지정)

대출금 또는 상기 채권만기시의 현금 입금계좌는 다음 계좌로 합니다.

계좌번호 :

예 금 주 :

제 3 조 (개별대출의 실행)

원 약정서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개별대출금은 INTERNET(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귀 행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담보 매출채권[귀 행이 원 약정서 및 본 추가약정서에 따라 본인에게 취급한 대출원리금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귀 행이 본인으로부터 양도받은 본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으로서, 그 채권의 채무자인 _____(이하 "거래처"라 합니다)로부터 통보받은 구체적인 채권명세를 기초로 귀 행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매출채권 내역을 뜻하며, 이하 "매출채권"이라 합니다]의 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한 후 개별적으로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대출받기로 하고, 귀 행 또는 인터넷 등의 전산상의 사유로 해당일에 취급하지 못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대출받기로 합니다.

단, 본인이 귀 행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담보 매출채권은 대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그 지급기일이 180일 이내인 채권에 대하여만 대출을 신청하기로 합니다.

제 4 조 (개별대출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

① 원 약정서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개별대출금의 상환기일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담보 매출채권의 변제기일로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개별대출금의 상환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담보 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귀 행이 동채권의 채무자인 거래처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아 총당하고, 거래처가 지급기일에 귀 행에게 담보매출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③ 거래처가 지급기일에 입금(또는 결제)한 매출채권결제금액이 협력기업들(본인 포함)의 매출채권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대출 취급 분, 미취급분의 순서로 회수하여 만기도래 순, 접수일자 순,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상환처리하기로 합니다.

④ 대출금이 연체된 경우에는 지급기일로부터 기산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날까지 귀 행의 은행계정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 5 조 (대출의 제한)

① 본인이 신용정보 관리규약상의 신규여신금지 기업 또는 귀행의 내규에 의한 신규여신금지기업에 해당하거나 또는 전쟁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귀 행은 본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② 인터넷 등 장애나 은행 전산상의 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귀 행에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를 못하거나 기타 귀 행 전산상의 장애로 귀 행이 대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본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③ 기타 귀 행이 채권양도통지의 법적효력이 발생되지 않아 제3자에 대한 귀 행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못 할 것으로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는 본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④ "원 약정서"상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에도 불구하고, 귀행과 거래처간에 체결한 '거래처의 협력기업들(본인 포함)에 대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총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 6 조 (정보제공의 동의)

본 약정의 원활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본인에 관한 기본정보 및 개별대출 실행내역등의 거래내역을 "거래처"에 제공함에 동의하기로 합니다.



제 7 조 (면책)

- ① 제출서류의 허위, 위·변조,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본인의 부담으로 하며, 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 ② 본 약정서의 거래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손실부담 및 면책)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8 조 (상환 의무)

본인의 거래처와 귀 행 간에 사전에 협의한 CMS, Real Time Banking 기타 전산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명세 통보시 해킹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채권명세, 내용이 변경된 경우와 본인이 인터넷 또는 창구에서 대출 신청시 전산오류와 해킹 등의 방법으로 인하여 외상매출채권금액보다 대출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 9 조 (본 추가약정의 효력)

본 추가약정, 원 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본 추가약정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원 약정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순서로 적용됩니다.



추가약정서(자동기한연장용)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귀 행과 _____년 _____월 _____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서”에 따라 약정한 등 대출금의 여신기한 종료일 전까지 은행 또는 채무자 중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구매기업과 은행이 정한 기한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자동연장이라 함은 별도의 한도거래 기간연장용 거래추가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은행이 정한 최장기간(30년) 내에서 자동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자동연장처리 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 약정에 의한 대출이 대출기일 현재 연체중인 경우
2. 채무자에 대해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 정보 ·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 부도정보 ·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 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 된 경우
3. 거래처(구매기업)와의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 (기업용)

(포괄계약)

(이하 "은행"이라 함)과 _____ (이하 "판매기업"이라 함)은 판매기업의 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판매기업이 _____ (이하 "구매기업"이라 함)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등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판매기업의 구매기업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은행이 판매기업에게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은행과 판매기업 양 당사자 사이의 채권양도계약과 기타 그와 관련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양도할 대상채권 및 피담보채무)

판매기업은 아래의 피담보채무(이하 "피담보채무"라 함)를 담보하기 위하여,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체결한 아래의 기본계약에 따라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일체의 채권(이하 "대상채권"이라 함)전액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

| | |
|-----------|---|
| 피담보채무의 범위 | 은행과 판매기업 당사자 사이에 _____년 _____월 _____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및 추가약정서(이하 "여신거래약정"이라 함)에 따라 판매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채무 기타 여신거래약정과 관련된 일체의 채무 |
| 기본계약 | 물품 또는 용역등과 관련하여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_____년 _____월 _____일 체결한 _____ 계약 및 이에 부수하여 체결한(또는 체결하는) 일체의 계약 등 또는 구매기업과 은행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일체의 매출채권의 원인 행위 등 |

제 3 조 (대리권 수여 및 채권양도 등)

① 개별 승낙방식인 경우

-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을 납품함으로써 매출채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확정되는 경우 구매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명세를 통보받은 은행은 판매기업을 대리하여 은행과 채권양도계약(자기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을 구매기업에게 요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
- 판매기업은 제1항의 대리권 수여 및 자기계약체결에 대한 동의와 관련하여 은행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은행은 구매기업으로부터 교부 송부받은 채권양도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득한 후 대출을 실행하기로 합니다.

② 포괄 승낙방식인 경우

- 판매기업은 이 채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을 대리하여 구매기업 앞 포괄채권양도 통지할 수 있는 대리권한을 은행에게 수여합니다.
- 이 채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외상매출채권은 이 계약에 의해 채권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 은행은 외상매출채권 양도 통지서(포괄 승낙방식용) 원본을 구매기업에게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판매기업의 진술 및 보증)

- 판매기업은 본 계약 체결시까지 대상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대상채권이 제3자에 의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사실도 없으며, 구매기업으로부터 회수 가능하고, 구매기업이 상계에 대항할 수 있는 판매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등 은행이 판매기업로부터 양수한 대상채권을 구매기업에게 행사하는 데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진술하고 그 내용의 진정을 보증합니다.
- 제4조 제1항에 따라 판매기업이 진술하고 보증한 사항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은행의 요청에 따라 판매기업은 그 즉시 은행에게 그에 상당하는 대체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 5 조 (변제충당 및 정산)

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양수한 대상채권을 구매기업에게 행사함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우선적으로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12조의 충당순서에 따라 판매기업의 은행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금원이 있으면 판매기업이 지정하는 판매기업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키기로 합니다. 단 판매기업의 다른 채권자가 대상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는 경우 그 압류된 금액 범위내에서 본계약에 의한 채권양도의 효력과 압류 등 효력이 선후가 결정될 때까지 남은 금원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 6 조 (담보가치의 유지)

대상채권에 대하여 판매기업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은 경우는 물론 사고, 사변, 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물품등의 하자, 불량 등이 발생하여 은행이 대상채권 대금을 구매기업으로부터 수령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은행에게 통지하고, 부족금액에 관하여는 은행의 지시에 따라 곧 변제하거나 상당액의 대신할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